



特許公報掲載公表는 刊行物發表에 該當

〈東京高裁 1982年 6月 22日 判決, 1981年(行ヶ) 第22號〉

1. 事件概要

가. 原告는 먼저 美國 特許出願을 하였으며 이 出願은 1971年 8月 31일에 美國 特許 第3602625 號로서 美國特許公報에 掲載되었다.

原告는 이것과 同一한 發明에 關하여 美國 特許公報掲載日로부터 6個月 以內가 되는 1972年 2月 23일에 日本에 特許出願을 하고 이 出願에 關하여 特許法 第30條1項의 適用의 規定을 받으려는 手續을 하였다.

2. 特許廳의 審決에서는 上記 美國 特許公報는 法 第30條1項에서의 刊行物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하여 同項의 規定適用을 認定하지 않고 本件 出願을 拒絶하였던 것인 바 原告는 이 審決의 取消을 要求하는 訴를 提起하였다.

2. 判決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 의하여 原告의 美國 出願이 美國 特許公報에 掲載된 것은 法 第30條1項에서 말하는 「刊行物의 發表」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判示하여 原告의 請求를 拒絶하였다. 即 同項에서 말하는 發表란 特許를 받을 權利를 갖는 者가 自己 스스로 發表하려는 積極的인 意思를 가지고 發表하는 것이며 他人이 發表하는 것을 容認한다고 하는 消極的인 意思가 存在하는 것만으로는 同條에서 말하는 發表라 할 수가 없다. 出願公告는 特許廳長官이 特許公報에 所定事項을 掲載하여 行하는 것으로서 出願人(特許

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出願에 關계되는 發明을 發表하려고 하는 積極的인 意思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特許를 받을 權利를 갖는 者가 特許出願을 하는 것은 이것에 의해 特許權을 取得하고 他人의 特許權取得을 阻止하는데 있으며 特許公報의 出願公告 또는 出願公開에 의해 出願에 關계되는 發明의 發表를 意圖하여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特許公報에 의한 發明의 公表에 關한 것은 日本 特許公報이거나 美國 特許公報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審決은 上記의 美國特許公報가 法第30條1項에서 말하는 刊行物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하는 點에서 妥當性을 缺如하고 있으며 特許公報에 의해 發明이 公表되는 것은 特許를 받을 權利를 가진 者가 法第30條1項에서 말하는 刊行物에 發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判斷하고 있다고 解釋되어 그 結論은 正當하다.

3. 論 評

外國特許公報에 掲載된 것이 法第30條1項에서 말하는 「刊行物에 發表」에 該當하는지의 與否는 實務問題로하여 오랫동안 見解가 나누어져 있었던 바이다. 이 判決은 이 問題에 關해서 裁判所의 見解를 나타낸 最初의 것이 아닌가 보아서 實務上 重要な 判決이라고 생각된다.

지난號의 國際工業所有權研究所 移轉案内중

電話번호를 742-5171(代表) 742-5171~5로 고칩니다